

투자자문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97조 제1항 제6조에 의거하여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수수료율】

- 투자자문 수수료는 만기정산형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선취수수료	성과 수수료	기준 수익률	정산 시점
투자자문수수료	계약금액의 1%	기준 수익률 초과 분의 20%	연 5%	계약종료시점

- 기준수익률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율이며,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기준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제3조【선취수수료】

- 선취수수료는 자문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선취수수료는 연 1%로 산정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추가로 징수합니다.

제4조【성과 수수료】

- 투자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대해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제2조의 요율을 적용하여 성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단,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계약 자산의 평가】

- 계약 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이하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계약체결일 전 권리락,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은 해당 자산의 임금(고)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자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락,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은 계약종료 시 평가 자산에 반영하여 평가 금액을 조정합니다.
-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 자산을 기준으로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평가 자산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 자산의 계산은 1항의 평가기준일을 준용합니다.

제6조【투자자문 수수료의 계산】

- 투자(자문) 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에 제2조에서부터 제4조를 근거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성과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 수수료	(평가 금액 - (원금 * (1 + 기준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

계약해지 시	산정기준수익률	(연 수익률/12)*해당산정기간
	성과 수수료	(평가 금액-(원금*(1+산정기준수익률)))*성과수수료율

3. 제5조3항의 경우 예상배당금과 실제배당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자문 성과를 재평가하여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제7조[계약해지 시 의 수수료]

1. 성과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해지 시에는 성과수수료와는 별도로 성과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고객과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3. 계약 종료해지 시 지급받은 선취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단, 종료해지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투자자문 수수료의 징수]

1. 선취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투자자산 추가증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에 제2조에서 제6조를 근거로 산정된 선취수수료 전액을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
2.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제2조에서부터 제7조에 의거 산정된 성과 수수료 및 해지 수수료 전액을 계약 만기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